

# 청대 궁정회화제도 연구

The Study of Institutional System of Ch'ing Court Painting Academy

설 숭 정(聶崇正)

북경 고궁박물원 연구원

역대의 왕조들은 규정된 예법 때문에 거의 모든 왕조가 궁정 내에 화가를 두어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최후의 왕조인 청조(清朝)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존하는 회화작품들의 수량면에서 역대 궁정회화는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의 작품들은 대다 수가 궁정화가의 그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궁정화가의 생애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없으며, 그들의 궁정 내 회화창작 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알려진 바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는 대부분의 궁정화가들이 모두 직업화가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시문집(詩文集)을 지어 후세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생애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문인회화(文人繪畫)와의 큰 차이점이다.

필자는 청대 궁정회화를 연구하면서 청 내무부 조판처(清內務部造辦處)의 문서자료를 다량 조사하였다. 비록 이 자료들이 매우 산발적이긴 하였지만 정리와 분석 작업을 통해 청대 궁정회화제도 이해에 매우 유용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하의 논문에서는 필자가 문서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관련자료들에 기타 문헌자료를 참가하여 세 가지 문항을 제기하고, 각 문항에서 관련된 청대 궁정회화내부의 제도를 서술한 뒤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 1. 궁정화가의 추천과 선발

궁정화가의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회화사(繪畫史)에 적지 않은 기록이 있었으며,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중에서도 송대(宋代) 한림도화원(翰林圖畫院)의 화가선발이 가장 재미있다. 송대 등춘(鄧椿)이 지은 『화계(畫繼)』의 기록에 의하면 송대 선화(宣和: 북송의 황제인 휘종(徽宗)) 조길(趙佶)의 연호, 재위 서기 1101년~1125년)년간의 화가들은 화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만 했고, 그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한림도화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시험 방법 또한 매우 특이하였다. 궁정의 시험 집행관이 고시(古詩)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아 시험의 제목으로 삼으면 시험에 응시한 화가들은 그 시구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글자로 써여진 시구를 시각적인 그림으로 바꾸어놓는 것이다. 『화계』에 기록된 시험 제목들을 보면 “어지러이 봉우리가 솟은 산 속에 오래된 절 숨어있네(亂山藏古寺)”, “인적 드문 강가에 아무도 건너는 이 없어. 외로운 배 한 척 진종일 가로놓여 있네(野水無人渡, 孤舟盡日橫)” 등의 시구들이 있다. 화가는 시험의 제목에 부합하도록 그림을 그려야 할 뿐만 아니라, 구상 또한 타월해야지 상투적이어서는 안 되

었다. 송대의 이러한 궁정화가 선발시험 방식은 후대에도 비슷하게 계승되었으나, 회화사에는 그다지 상세하고 계통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청대의 회화사에도 화가 선발방식에 대한 기록은 부재한다. 그러나, 산발적인 문서자료를 통해 회화사의 미비함을 보충해볼 수 있겠다. 청대에는 꽤 유명한 초상화가였던 서장(徐璋: 서기 1694년 ~?)이 북경(北京)에서 유사한 시험에 응시한 일이 있었다. 건륭(乾隆) 연간의 문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건륭 14년 5월 26일, 사고(司庫)인 몽고인 백세수(白世秀)가 도랍(圖拉)에게 초상화 가인 서장을 소개시켰다. 서장은 송강부 누현(松江府 婦縣) 사람으로 56세이다. 접편(摺片)에 정서 한 것을 가지고 와서 태감(太監) 호세걸(胡世杰)에게 바쳤다. 황제의 명에 의해 서장은 그림을 한 장 그려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할 것.” “건륭 14년 5월, 금월 27일, 사고 몽고인 백세수 보고, 태감 호세걸 전달: 서장은 시험적으로 그림을 그려 바쳐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할 것.” 이 문서는 이 일에 관해 건륭황제가 어떻게 회답하였는지 설명해주는 것이다. 당일의 또 다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금일 서장이 수묵산수소견화(水墨山水小絹畫)를 다 그리지 못한 채 그것을 태감호세걸에게 바쳤다. 황제의 명에 의해 서장은 춘우서화행주(春雨舒和行走)를 그려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할 것.” 비록 화가 서장은 얼마 지나지않아 궁정을 떠났지만, 이상의 문서기록을 통해 청대에 화가를 선발하고 채용할 때에도 전대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거쳐야만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청대의 궁정화가 선발에도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었다. 민간 출신의 화가가 궁정에 들어가려면 먼저 권세가의 추천을 받아야만 했다. 이와 같은 첫 단계를 거쳐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화가 서장도 당시 소주(蘇州) 직조부(織造府) 직조(織造)였던 도랍(圖拉)이 추천한 사람이었다. 직조부의 직조란 황실에 각종 직물을 직조, 공급하는 역할 외에 궁정에 화가를 추천하는 임무도 띠고 있었다.

조정의 관리와 지방의 관리가 모두 조정에 화가를 추천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경우는 매우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건륭 연간의 궁정화가였던 여성(余省), 여치(余穉)형제는 궁정화가가 되기 전에 호부상서(戶部尙書)이자 내무부 대신(內務部大臣)이었던 해망(海望)의 집에 20여년간 기거한 적이 있었으며, 대학사(大學士)인 장정석(蔣廷錫)에게 그림을 사사받은 경력이 있었다. 그들 형제가 궁정화가가 된 것은 해망과 장정석의 든든한 추천 덕분이었던 것이다. 또 화가 왕잠(王岑)의 경우는 수도인 북경(北京)에 체류시, 대신인 장조(張照), 동방달(董邦達), 장약애(張若靄) 등과 모두 교류하였으며, 결국에는 형부시랑(刑部侍郎)인 여종만(勵宗萬)의 추천을 통해 궁정화가가 되었다. 화가 원영(袁瑛)은 특히 산수화에 능했는데, 건륭 30년(서기 1765년)에 호부시랑(戶部侍郎)인 이인배(李因培)의 추천으로 궁정화가가 되어서 20여년간 궁정생활을 하였다. 초상화가였던 진사준(陳士俊)은 북경 체류시 형부상서 장조(張照), 예부상서 장약애와 제법 교류를 가졌고, 후에 장약애의 추천을 통해 다년간 궁정화가를 지냈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화가들이 권세가의 추천을 받았더라도 시험에 통과해야만 정식 궁정화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정의 관리와 같은 유력인사의 추천 외에 어떤 화가들은 “그림을 바쳐 스스로를 알리는” 방법을 통해 궁정화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화가들은 먼저 상당한 실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거나와 더불어 적당한 기회를 잡아야만 했다. 김정표(金廷標)와 서양(徐揚) 두 화가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서양은 다재다능한 화가로서, 산수·꽃과 새·풀과 벌레·계화(界畫)에 모두 능했다. 건륭 12년(서기 1751년), 건륭황제는 즉위 후 처음으로 남방지역 순행(巡行)에 올랐는데, 황제의 행차가 소주에 이르렀을 때 서양은 자신의 화첩을 황제에게 바쳐 찬사를 받았고, 곧이어 궁정화가가 되어

북경에 가게 되었다. 김정표(서기 ?~1767년) 역시 다양한 화법에 모두 능했던 화가인데, 건륭 22년(서기 1757년) 건륭황제가 즉위 후 두 번 째로 남방지역을 순행하자, 본인이 직접 「백묘나한도(白描羅漢圖)」를 옮겨 황제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경하여 궁정화가가 되었다. 엄옥(嚴鈺)이라는 화가도 있다. 그는 건륭 30년(서기 1765년), 황제의 남방지역 순행 시 산수화첩 20첩에 본인이 직접 지은 사(詞) "강남이 좋다네(江南好)"까지 뒤에 붙여 황제에게 바쳤다. 황제는 이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여 결국 엄옥을 궁정화가로 임명하였다.

그래도 청대 궁정화가 중 상당부분은 부자나 사제간에 계승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원인은 쉽사리 납득이 가능하다. 부친이나 조부, 혹은 스승이 장기간 궁정화가로 있었다면 이러한 관계로 인해 그들의 자식이나 제자가 궁정화가가 되는 것은 자연스레 쉬운 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예가 적지 않다. 화가인 초병정(焦秉貞)과 냉매(冷枚)는 사제지간으로, 그들은 연이어 강희(康熙)년간에 궁정화가를 지냈다. 또 장진(張震)은 강희, 옹정(雍正)년간에 걸쳐 궁정화가를 지냈고, 장진의 아들인 장위방(張爲邦)은 옹정 년간부터 궁정화가 생활을 시작하였다. 장위방은 건륭 년간 까지 궁중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가 늙자 자신의 아들인 장정언(張廷彥)을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하였다. 이처럼 삼대에 걸쳐 연속 궁정화가로 재직하는 경우도 과히 특별한 경우는 아니었다. 손부(孫阜)는 강희 년간의 궁정화가였고, 그의 아들인 손위봉(孫威鳳)은 옹정 년간에 궁정에서 일하였다. 화가인 왕개(王玠)는 강희, 옹정 년간에 걸쳐 궁정에서 재직하였는데, 그의 아들 중의 하나인 왕유학(王幼學)은 건륭 16년(서기 1751년)에 먼저 입궁하였고, 이어 그의 또 다른 아들인 왕유학(王儒學)도 입궁하여 궁정화가로 일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하였듯이 청대 궁정화가의 추천 및 선발방식은 송대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시험은 그 중의 한 방법이었을 뿐이며 그 외에 인맥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청대 궁정화화의 수준은 송대 화원의 작품과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송대 화원은 주위의 화단(畫壇)에 대해 주류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으나, 청대 궁정화화는 단지 전체 화단 중의 한 부분이거나 하나의 유파 정도에 그칠 뿐이었던 것이다.

## 2. 궁정화가의 등급

중국의 역대 궁정들은 많은 화가들에게 관직을 허용하였으며, 이러한 화가들에 모두 각자의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지위·경력·수준 및 대우에 차등을 두었다. 예를 들어 송조(宋朝)의 화원 소속 화가들은 대조(待詔)·지후(祇侯)·예학(藝學)·화학생(畫學生)과 같이 등급에 따른 호칭이 있었다. 명조(明朝)의 궁정화가들은 금의위(錦衣衛)의 직무를 가지고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명대에는 대개 금의위의 직함을 사용하였는데, 화가들에게는 대개 무관직을 부여하였다.”(淸·호경(胡敬), 『국조원화록(國朝院畫錄)』). 그들은 금의도지휘(錦衣都指揮)·금의지휘(錦衣指揮)·금의천호(錦衣千戶)·금의백호(錦衣百戶)·금의진무(錦衣鎮撫)의 순서대로 분류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각각 다른 종류의 문헌에 산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다.

청조도 역대 왕조와 마찬가지로 궁정 내에 화가들을 모아놓고 그림을 창작하도록 하였는데, 그 규모가 매우 커으며, 전해지는 작품도 매우 많다. 그러나 관련 역사자료 중 호경이 쓴 『국조원화록』, 『서청차기(西清劄記)』나 공동저작인 『석거보급(石渠寶笈)』 등에는 청대 궁정화가의 등급에 대한 기록이 없다. 비록 청대가 송, 명대에 비해 시간적으로 오늘날과 더 가깝기는 하지만 이런 류의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대만큼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필자는 북경의 중국 제1 역사문건보관소에서 대량의 청조 내무부 문건을 조사하면 중 가치있는 1차자료들을 많이 발견 할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청대 궁정화가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어, 이 자료들을 통해 역사서술에서 빠진 점을 보충할 수 있었다. 이하의 내용은 발견된 관련자료들을 귀납하고 정리 한 것들이다.

건륭 6년(서기 1741년) 청 내무부의 “개인작성 작업성과 명세서” 중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사고(司庫) 백세수(白世秀) 보고, 태감(太監) 고옥(高玉) 전달: 화원의 화가들 등급은 다음과 같다. 김곤(金昆), 손호(孫祜), 정관봉(丁觀鵬), 장우삼(張雨森), 여성(余省), 주곤(周鯤) 등 6명은 1등급으로, 매월 봉급 은8량(兩)과 공금 은3량을 지급한다. 오계(吳桂), 여치(余輝), 정지도(程志道), 장위방(張爲邦) 등 4명은 2등급으로, 매월 봉급 은6량과 공금 은3량을 지급한다. 대홍(戴洪), 노담(盧湛), 오역(吳械), 대정(戴正), 서도(徐燾) 등 5명은 3등급으로, 매월 봉급 은4량과 공금 은3량을 지급한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할 것.” 이는 건륭년간 초기에 황제가 이상 15명의 화가들에 대해 규정 한 등급의 내역이다. 이를 통해 청조의 궁정화가 역시 전대의 궁정화가와 마찬가지로 등급의 구분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궁정화가는 모두 3등급으로 나뉘어졌으며, 각자 매월 받는 공금의 양은 균 일하게 은3량이었다. 단지 봉급에 차이가 있었을 뿐인데, 매 등급마다 은2량의 차액을 두었다.

건륭 16년(서기 1751년), 황제가 남방을 순행하다가 소주에 들렀을 때, 화가 장종창(張宗蒼)과 서양(徐揚)이 황제에게 그림을 바쳐서 발탁되어 궁내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 해 7월의 내무부 문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화가 장종창과 서양에게는 매월 여성, 정관봉과 같은 수준 의 공금이 지급되며, 이는 6월부터 시행한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할 것.” 위에서 인용한 문서의 기록내용에 의하면 여성과 정관봉은 건륭 6년에 1등급의 화가로 거명된 사람들인데, 장종창과 서양이 그들과 같은 수준이라면, 그들 역시 1등 화가라고 해야할 것이다. 입궁하자마자 이렇게 최고급의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건륭황제가 그들 두 화가를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건륭황제 이전에도 궁정화가의 등급이 있었을까? 문서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직접적인 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화가의 봉급에 대한 규정은 있었다. 옹정 4년(서기 1726년) “개인작성 작업성과 명세서”의 기록에 의하면 “육품관(六品官) 아란태(阿蘭泰) 보고: 화가 정유(丁裕), 침희(詹熹), 정관봉, 정지도, 하영청(賀永淸)에게는 매월 봉급으로 은8량과 공금 은3량을 지급한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건륭년간의 등급에 의하면 봉급으로 은8량과 공금 은3량을 받는 것은 1등급의 화가여야만 한다. 이 문서에서 거명되는 정관봉은 옹정, 건륭 양대에 걸쳐 모두 1등급 화가의 대우를 받고 있어 지위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정지도는 옹정년간에는 1등급 화가의 대우를 받다가 건륭년간에 이르러는 2등급 화가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청대 궁정화가의 등급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화가가 궁정에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예술의 수준이 높아졌는지의 여부 및 각자 다른 황제의 취향에 따라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궁정화가의 지위는 올라가기도 하도 내려가기도 하여, “평생보장”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때문에 궁정에서 일하는 화가들은 부지런히 작품창작에 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코 나태해질 수 없었다. 강등되는 경우에는 심하면 면직되기도 하였다.

옹정 4년(서기 1726년)의 또다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내무부 일을 책임지고 있는 이친왕 윤상(怡親王允祥)이 명령을 내려 자녕궁(慈寧宮)에 신임화가들인 장립(張霖), 오계, 오역, 진민(陳敏), 팽학(彭鶴), 왕균(王均), 섭리풍(葉履豐) 등 7명을 “일단은 시험적으로 써본다”고 하였으며, 시용기간동안은 “매 사람에게 매월 임시급여로 봉급은 3량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그 중 오계

와 오역 두 사람은 건륭년간에 이르면 제1등급과 제2등급 화가로 분류된다. 이 문서를 통해 정식 궁정화가가 되기 전에 신임화가들은 모두 임시고용기간을 거쳐야만 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생활비만 지급되었고, 공금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곧, 봉급만 지급되었을 뿐, 작업비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화가의 신분은 송대 화원의 “화학생”과 흡사하다.

청 내무부의 문서자료가 옹정과 건륭년간 것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청조 전기 순치(順治), 강희(康熙)년간의 궁정화가 상황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모호하게 알려져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순치와 강희년간은 청조가 중원에 자리잡은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정권강화와 경제회복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회화방면에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쏟았을 리 없다. 궁정의 회화기관이나 제도는 미비하였음이 확실하다.

청 내무부의 관련자료를 참조한 덕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많고 진일보된 내용을 알아낼 수 있었다. 청대 궁정 역사 전대의 궁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화가들의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으며, 이러한 방법과 그 외 다수의 제도를 통해 청 왕조는 궁정에서 일하는 화가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 3. 궁정화가에 대한 장려와 징계

어떠한 부문이나 조직이든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완정하고도 엄격한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사람을 다루는 방면에서 상별제도는 매우 요긴한 방법이다. 청대의 궁정화가는 내무부 조판처 관할에 속해있었고, 황제가 태감을 통해 명령을 내리면 내무부 총관대신 등이 명령대로 실시하였다. 조판처의 화가는 그림을 잘 그리고, 근면하며 출근률이 높으면 모두 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징벌을 받아야 했다. 필자는 청조 궁정의 문서를 조사하던 중 이 방면에 관한 기록을 일부 발견하였다. 여기에서는 그것들 중 일부를 간추리고 거기에 간단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기존의 회화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보건대, 궁정화가에 대한 상별로는 다음 세 가지 형식이 있었다. 곧 금전, 물질, 그리고 휴가가 그것이다.

건륭 원년(서기 1736년), 궁정화가인 당대(唐岱), 낭세녕(郎世寧), 그리고 낭세녕의 학생인 왕유학이 홀륭하게 그림을 그렸다고하여 황제가 당대와 낭세녕에게는 각각 인삼 2근과 비단 2필을, 왕유학에게는 관용(官用) 단자 2필을 하사하였다. 같은 해 낭세녕 등의 화가들은 또다시 황제로부터 어용(御用) 단자와 담비 모피 등 진귀한 물품들을 상으로 받았다. 강희년간부터 궁정화가로 있었던 노(老)화가 냉목은 건륭 7년(1742년)에 상금으로 은50량을 받았다. 이는 과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가 궁정에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수고한 데에 대한 격려금이었다. 또한 같은 해 낭세녕, 왕치성(王致誠), 왕유학, 장위방, 손호, 정관봉, 심원(沈源) 등의 화가들은 각각 원보(元寶: 화폐의 일종) 하나와 단자 한 필 씩을 상으로 받았다. 이상은 궁정화가들이 황제로부터 받은 금전적, 물질적 상이다.

화가들에게 주어졌던 장려의 형식 중 또 다른 하나는 궁정화가들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것이었다. 김정표는 건륭황제가 매우 애호하던 화가였는데, 건륭 28년(1763년), 김정표의 부친인 김홍(金泓, 혹은 金鴻)이 병으로 세상을 뜨자 황제는 특별히 그에게 남방의 고향으로 돌아가 상을 치루도록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동안에도 전과 다름없이 봉급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궁정화가였던 주곤은 남방출신인데, 처음 북방으로 오게 되자 풍토가 잘 맞지 않아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었

다. 그러자 그는 황제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요양하도록 허가해달라고 청하면서 병이 나으면 다시 궁정으로 돌아와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다. 건륭황제는 매우 주곤의 재능을 높이 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청을 들어주었고, 3년 후 주곤은 병이 나아 궁정으로 돌아와서 일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휴가 역시 황제가 궁정화가들에게 내렸던 장려방식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건륭 42년(서기 1777년)에는 궁정에서 일하던 유럽의 화가 애계몽(艾啓蒙)이 70세 생일을 맞게 되었다. 건륭황제는 원명원(圓明園)으로 그를 불러 조복(朝服)과 “외국에서 노년을 지내다(海國耆齡)”라고 황제가 쓴 편액을 하사하였으며, 북경에 있던 다른 유럽 선교사들도 모두 이 축하예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황제는 명령을 내려 애계몽을 여덟명이 어깨에 지는 가마에 태우고 악대를 거느린 채 북경 시내를 돌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였으니, 이야기로 궁정화가에게는 최고의 장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화가는 생전에 황제로부터 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일정한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선교사 화가인 낭세녕은 건륭 31년(서기 1766년)에 세상을 떠난 후 건륭황제의 명령에 따라 특별히 시랑이라는 직함이 추가되었으며, 장례비용으로 은3백량이 내려졌다. 화가가 죽은 뒤에 혜택을 베푸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역시 황제가 화가들을 장려하는 방법 중의 하나였다.

이상의 각종 장려방식들은 모두 궁정화가로 하여금 더욱 실력을 향상하고 작품활동을 열심히하여 황제를 위해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나 궁중에서 장려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장려에 대응하여 반드시 엄격한 징벌도 갖추어야 했다. 일반적으로는 궁정화가가 성실하게 작품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근무태도가 태만하면 징계를 받게 되어있었다.

옹정 6년(1728년) 11월, 내무부 문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육품관 아란태가 이친왕에게 자녕궁 화가 중 불성실한 자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황제의 명을 받들어 심유(沈嶧)는 당영(唐英)의 전례에 따라 매일 검사를 받도록 하고, 만약에 오지 않을 경우에는 황제께 보고한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할 것.” 이친왕 윤상은 옹정황제의 동생으로 내무부의 일을 총관하였으며, 궁정화가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친왕의 지시에 따라 심유는 자녕궁의 화가 중 엄격한 검사를 받았으며, 다음해 4월, 화가 왕균은 면직당했다. 면직이란 곧 제명으로, 청대 궁정에서 내에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징벌이었다.

건륭 11년(서기 1746년), 궁정화가였던 김곤(金昆)은 명에 따라 「대열도(大閱圖)」를 그렸는데, 제작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팔기(八旗)의 위치를 잘못 그리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숨기려고 하였다. 건륭황제는 이 일을 알게 되자 매우 분노하여 이친왕 윤상과 내대신 해망(內大臣海望)에게 명하여 김곤의 죄에 대해 그의 봉급지급을 중단하고, 그를 면직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궁정화가의 작업을 감독하던 최총화선(催總花善)에 대해서도 감독소홀로 봉록지급을 중단하도록 결정하였다. 김곤은 급히 잘못 그려진 부분을 고쳤고, 다른 사람들도 선처를 호소하였는데다, 김곤이 그래도 궁정에서 장시간 재직한 화가이고, 그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참작되고서야 건륭황제는 비로소 김곤에게 궁정에 남아 그림을 계속 그리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당월치 봉급은 절반만 지급하였고, 감독을 소홀히 한 최총화선에게도 절반만 지급하였다.

이상에 인용한 문서자료에 의하면 청대 궁정화가들이 받았던 징계의 종류는 면직과 봉급의 지불정지 혹은 감봉의 두 종류 뿐이다.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대의 궁정화가들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명조의 어떤 궁정화가들은 그들의 그림이 “황제의 뜻을 거역했다”라는 이유로 어명에 의해 사형에 처해

졌다. 명초의 궁정화가였던 조원(趙原)은 “황제의 뜻에 어긋나게 응대하여 죽음을 당했다.”(주모인(朱謀壘)『화사회요(畫史會要)』), 성저(盛著)는 그림에서 “물의 신이 용의 등을 타고 있는 것이 왕의 뜻에 어긋나 거리에서 사형을 당한 후, 그의 시체는 그대로 버려졌다.”(서심(徐沁)『명화록(明畫錄)』). 청조의 황제들이 “문자옥(文字獄)”을 크게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청조에 “도화옥(圖畫獄)”이 있었다는 말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상 세 가지 방면의 문제는 모두 청대 내무부 조판처의 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귀납하여 정리한 것들이다. 다른 자료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통해 기존 회화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清代宮廷繪畫制度探微

聂崇正 (Nie, Chongzheng)

北京古宮博物館研究員

歷代的王朝由於禮制的需要，幾乎都在宮廷內容納畫家從事繪畫創作，而中國歷史上最後一個王朝清朝也是如此，從現在存世的繪畫作品數量來看，歷代的宮廷繪畫占有很大的比例，而且早期的作品大都是宮廷畫家所畫。不過大部分的宮廷畫家生平事迹均無詳細的記載，同樣對於他們在宮廷中作畫的細節也所知甚少。這是因為大部分宮廷畫家均為職業畫師，自己無詩文集傳世，也沒有別人詳細記錄他們的生平行狀。這一情形與文人繪畫形成極大的反差。

筆者在研究清代宮廷繪畫時，查閱了大量的清內務府造辦處的檔案資料。這些材料雖然非常零星分散，但是經過整理分析後，對於了解清代宮廷繪畫的制度，有着極為有用的價值。下面將筆者在查閱檔案過程中所見到的有關材料，再結合其他的文獻資料，列為三個問題，分述清代宮廷繪畫內部的制度，并略作說明。

## 一、宮廷畫家的推薦和選拔

畫史上關於如何選拔宮廷畫家，有過不少的記載，並流傳下許多故事。其中以宋代翰林圖畫院畫家的選拔最具浪漫色彩。根據宋·鄭椿所著之『畫繼』一書記載，宋代宣和(北宋皇帝徽宗趙佶年號，公元一一〇一年至一一二五年在位)時畫家在進入畫院之前，需要經過考試，合格者才能成為翰林圖畫院的成員。而考試的方法亦很別致，就是由宮廷主考人在古詩中尋找一句現成的詩句，作為考試的題目，應考的畫家們，根據自己對詩意的理解，發揮想象力，將文字的詩句變為可視的圖畫。據『畫繼』上記述試題有“亂山藏古寺”，“野水無人渡，孤舟盡日橫”等句。要求作畫者不但切合試題，而且還要構思巧妙，不落俗套。宋代這種出題考試選拔宮廷畫家的做法，以後各代也大同小異，只不過畫史上沒有詳細系統的記述而已。

在清代的畫史中同樣也沒有關於如何選拔吸納畫家的記載，檔案中的零星材料，可以補充畫史的不足。清代有一位頗有名氣的肖像畫家徐璋(公元一六九四年至？年)，就曾經到北京參加過類似的考試。乾隆年間的檔案記錄：“乾隆十四年五月二十六日，司庫白世秀達子將奴才圖拉跪進畫喜容徐璋，系松江府婁縣之民，年五十六歲，繕寫摺片一件持進，交太監胡世杰轉奏。奉旨：着伊畫一張，欽此。”“乾隆十四年五月，於本月二十七日，司庫白世秀達子來說，太監胡世杰傳旨：要徐璋試手畫呈覽，欽此。”這則檔案說明乾隆皇帝對此事的答復。當天的又一則檔案記載說：“於本日，隨將徐璋未畫完水墨山水小絹畫一張，持進交太監胡世杰呈覽。奉旨：徐璋着交春雨舒和行走，欽此。”雖然畫家徐璋後來不久就離開了宮廷，但是從以上檔案中的記述，可以清楚地看到，清代在選拔及

吸納畫家時，與前代相似，同樣是要經過考試這一步驟的。

當然，清代在選拔宮廷畫家時，又有它自己的特點。民間畫家如果想要進入宮廷，先需有權勢者推薦，此為第一步，然後才能有機會去參加考試。上面提及的畫家徐璋，就是由當時任蘇州織造府織造的圖拉推薦的。織造府的織造除去為皇室織造各類用品外，還負有向宮廷推薦畫家的責任。

在朝的官員和地方官員也都有向朝廷推薦畫家的責任，這樣的例子同樣十分常見。乾隆時的宮廷畫家余省、余穉兄弟，在進宮供職之前，曾經寓居於戶部尚書兼內務府大臣海望家中二十餘年，又曾向大學士蔣廷錫學畫。他們兄弟二人能夠進入宮廷供職，就是與海望、蔣廷錫的鼎力推薦有關；又如畫家王岑，在京師時與大臣張照、董邦達、張若靄等均有交往，最後經刑部侍郎勵宗萬的推薦，成為宮廷畫家；畫家袁瑛，擅長畫山水，於乾隆三十年（公元一七六五年）由戶部侍郎李因培推薦入宮，供奉內廷二十餘年；陳士俊是一位肖像畫家，在京師時與刑部尚書張照、禮部尚書張若靄頗有交往，後來經張若靄推薦，進入宮廷作畫多年。根據以上所舉事例，可知這些畫家經有權勢者推薦後，仍然還需通過考試，才能正式成為一名宮廷畫家。

除去要有朝臣等的有力推薦之外，還有個別的畫家則是通過“獻畫自薦”的途徑而進入宮廷的。當然首先這些畫家要具有相當的實力，另外也需要有適當的時機。金廷標和徐揚這兩位畫家便是很典型的例子。徐揚是一位手段全面的畫家，擅長畫山水、花鳥、草蟲、界畫，乾隆十二年（公元一七五一年），乾隆皇帝即位後首次南巡，抵達蘇州時，徐揚恭進畫冊，得到贊賞，不久來到北京宮廷供職；金廷標（公元？年至一七六七年），同樣是一位畫法全面的畫家，乾隆二十二年（公元一七五七年），乾隆皇帝在位後第二次南巡時，金廷標主動進獻《白描羅漢圖》冊，得到皇帝的嘉許，隨之北上進入宮廷供職；還有另一畫家嚴鉅，於乾隆三十年（公元一七六五年）皇帝南巡時進獻山水冊頁二十開，并附自己所作之“江南好”詞於後，深得皇帝的欣賞，論嚴鉅供奉內廷。

清代宮廷畫家中還有相當一部份是屬於父子相承、師徒相繼的。這其中的原因也很好理解，既然父親、祖父或師傅長期在宮廷內供職，依靠這一層關係，他們的弟子進入宮廷供職自然是比較容易的事情，這樣的例子也有不少。畫家焦秉貞和冷枚是師徒，他們先後於康熙年間進入宮廷服務；又如畫家張震，於康熙、雍正時在宮廷中供職，張震之子張爲邦便於雍正時進入宮廷成為供奉畫家。張爲邦在宮中作畫延續至乾隆時，等到他年老時，又推薦他的兒子張廷彥來頂替作畫。如此祖孫三代先後在宮中供職的繪畫世家並非個別的例子。又如孫阜，是康熙時的宮廷畫家，其子孫威鳳就在雍正時進入宮廷供職；畫家王玠於康熙、雍正時供職於宮廷，他的一个兒子王幼學便在乾隆十六年（公元一七五一年）先期進入宮廷供職，隨後他的另一個兒子王儒學也入宮供職。

由此看來，清代宮廷畫家的推薦與選拔和宋代相比，考試只是其中的一道關，其他人情的因素是很大的，故而清代宮廷繪畫的水平也是無法與宋代畫院作品相比的。宋代院畫能夠起到左右畫壇的主流作用，而清代宮廷繪畫只能是整個畫壇的一分子或一個流派而已。

## 二、宮廷畫家的等級

中國歷代的宮廷中，都容納了衆多畫家供職，而且這部份畫家均有不同的職稱，以區別他們的地位、資歷、水平和待遇。比如宋朝畫院中的畫家就有待詔、祇候、藝學、畫學生等若干等級的稱呼；明朝宮廷畫家則以錦衣衛的職務來表明身份的高低，“明多假以錦衣衛銜，以繪技畫工概授武職”（清·胡敬《國朝院畫錄》），依次為錦衣都指揮、錦衣指揮、錦衣千戶、錦衣百戶、錦衣鎮撫。

以上情形均散見於各類文獻之記載。

清朝依循前代，同樣也在宮廷內搜羅畫家，進行繪畫創作。規模很大，流傳下來的作品也非常多。但是有關的畫史資料中，如胡敬所著的『國朝院畫錄』，『西清劄記』；集體編著的『石渠寶笈』等，均無清宮畫家劃分等級的記載。雖然清代較宋、明距現在更為晚近，但是對此類情形的了解，反倒沒有前者明晰。筆者曾經在北京的中國第一歷史檔案館中查閱過大量清朝的內務府檔案，從中發現了很多有價值的原始資料，其中就包括了清朝宮廷畫家等級劃分的記載，這些材料可補畫史記述之闕略。現將所見的有關資料歸納，整理，分述如下。

乾隆六年(公元一七四一年)清內務府“各作成做活計清檔”中記載：“司庫白世秀來說，太監高玉傳旨：畫院處畫畫人等次，金昆，孫祜，丁觀鵬，張雨森，余省，周鯤等六人一等，每月給食錢糧銀八兩，公費銀三兩；吳桂，余穉，程志道，張爲邦等四人二等，每月給食錢糧銀六兩，公費銀三兩；戴洪，盧湛，吳械，戴正，徐燾等五人三等，每月給食錢糧銀四兩，公費銀三兩。欽此。”這是乾隆初年由皇帝定出了以上十五個畫家的級別。由此可以知道，清朝宮廷畫家與前代宮廷畫家一樣，也是有等級區別的。宮廷畫家共分為三等，每人每月的公費銀數量是一樣的，都是三兩，不同的只是食錢糧銀，每個級別間有銀二兩的差額。

乾隆十六年(公元一七五一年)，皇帝南巡至蘇州時，畫家張宗蒼，徐揚獻畫，隨後二人被召入宮內作畫，同年七月的內務府檔案中就有記載：“畫畫人張宗蒼，徐揚每月錢糧公費照余省，丁觀鵬一樣賞給，於六月起。欽此”。根據以上所引檔案記載，余省和丁觀鵬在乾隆六年是列為一等畫畫人標準的，那麼張宗蒼和徐揚同他們二人相同，也應當是一等畫畫人。一入宮馬上就得到最高級別的待遇，乾隆皇帝是非常看重這兩位畫家的。

那麼在乾隆皇帝之前宮廷中畫家有無等級之分呢？檔案內尚未見到明確直接的記載，但是對畫家的俸銀也有規定。雍正四年(公元一七二六年)“各作成做活計清檔”記載：“六品官阿蘭泰奉旨：着給畫畫人丁裕，詹熹，丁觀鵬，程志道，賀永清每月錢糧銀八兩，公費銀三兩。欽此。”如果按照乾隆時的等級來看，獲錢糧銀八兩，公費銀三兩的人應當是一等畫家。這則檔案中所列的丁觀鵬，在雍正，乾隆兩朝均為一等畫家的待遇，地位沒有變動；而程志道於雍正時享受一等畫家的待遇，到了乾隆時則改為二等畫家了，由此可見，清代宮廷畫家所定的等級並非是固定不變的，它可以根據畫家在宮廷中供職是否勤勉，藝術水平有無提高，亦或不同皇帝欣賞口味的區別而有所變動。也就是說，宮廷畫家的地位可能會有升有降，不是“鐵飯碗”。這就使得供奉宮廷的畫家必須兢兢業業，認真作畫不能怠慢，以免遭到降級的命運，事態嚴重的話，還會被革除職務。

雍正四年(公元一七二六年)的另一則檔案中記載：負責內務府工作的怡親王允祥曾經下命令，讓慈寧宮新來的畫畫人張霖，吳桂，吳械，陳敏，彭鶴，王均，葉履豐等七人，“暫且行走試看”，在試用期間“每人每月暫給飯食銀三兩”。其中的吳桂，吳械二人到了乾隆時已分別列為一等和二等畫家了。從這則檔案中可知，在成為正式宮廷畫家之前，所有新來的畫家都有一個試用期，在這一期間內只有飯食銀，而沒有公費銀。也就是說只發給飯錢，不發給工錢。這種畫家的身份，就頗類似於宋代畫院中的“畫學生”。

由於清內務府的檔案資料，只見到雍正和乾隆兩朝的，所以我們對清朝前期順治和康熙兩朝時，宮廷畫家狀況的了解還是十分模糊和有限。按照常理，順治和康熙時，清朝入關定鼎中原未久，鞏固政權，恢復經濟為首要任務，不會有太多精力用在繪畫方面，宮廷繪畫的機構和制度想必是不會很完善的。

清內務府有關檔案資料的披露，使我們對這一問題有了更多更進一步的了解。顯然，在清代宮廷

中也和前代宮廷一樣，有着很嚴格的畫家劃分等級的做法，通過這些做法和其他很多制度，清廷對供奉宮廷的畫家進行着非常有效的使用和控制。

### 三、宮廷畫家的獎懲

任何部門和機構，為保証運作的順利，都需要有一套完整，嚴密的制度。在用人方面，獎懲賞罰分明，就是十分必要的做法。清代的宮廷畫家是隸屬於內務府造辦處管轄的，皇帝通過太監傳達他的命令，由內務府總官大臣等實施。造辦處內的畫家作畫技藝好，為人勤勉，出勤率高，都會得到獎賞；如果相反，則要受到懲罰。筆者在查閱清宮檔案時，發現一部分關於這方面的記載，現摘錄如後，并略加說明，以補充畫史敘述之所闕。

從檔案記載來看，對宮廷畫家的獎賞有下列三種形式，即錢財，實物和假期。

乾隆元年(公元一七三六年)宮廷畫家唐岱，郎世寧以及郎世寧的學生王幼學因為畫畫出色，皇帝傳旨賞給唐岱和郎世寧每人人參二斤，紗二匹，王幼學得到官用緞二匹。同年郎世寧等畫家又得到皇帝賞給的御用緞，貂皮等珍貴物品。康熙時入宮的老畫師冷枚，在乾隆七年(公元一七四二年)獲得賞銀五十兩，這是一個不小的數目，以獎勵他在宮廷內長期供職的辛勞。同年畫家郎世寧，王致誠，王幼學，張爲邦，孫祜，丁觀鵬，沈源等分別得到一個元寶和一匹緞的獎賞。以上是宮廷畫家得到皇帝錢財和實物的賞賜。

獎勵的另一種形式則是給予宮廷畫家某種特許的假期。金廷標是一位得到乾隆皇帝欣賞的畫家，乾隆二十八年(公元一七六三年)金廷標的父親金泓(或作金鴻)病逝，皇帝特別恩准金廷標回到南方家鄉奔喪，而且在此期間照舊發給俸祿。宮廷畫家周鯤系南方人，初到北方，水土不服，久病不愈，便請求皇帝允許他回到老家養病，并表示病好了之後仍然再進宮效力。因為乾隆皇帝頗為嘉許周鯤的畫藝，同意了他的請求。三年後，周鯤病愈，還是回到了宮廷中繼續供職。這類假期，也是皇帝給予宮廷畫家的一種獎勵方式。

乾隆四十二年(公元一七七七年)供職宮廷的歐洲畫家艾啓蒙七十歲生日的時候，於圓明園得到乾隆皇帝召見，并賜朝服及御題“海國耆齡”匾，在北京的其他歐洲傳教士亦參加了慶祝典禮，還下命令，使艾啓蒙獲得了乘坐八抬肩輿，樂隊官員隨行在京師中巡游的榮耀，這也應當是對宮廷畫家的很高獎勵。

特別受到皇帝喜愛的畫家，不但在生前會獲得皇帝給予的賞賜，而且在死後，也能有一定的榮譽。比如意大利傳教士畫家郎世寧，於乾隆三十一年(公元一七六六年)去世後，根據乾隆皇帝的諭旨，特追加侍郎銜，并賞銀三百兩為其料喪事。畫家死後封賜的事例並不多。其實這也是皇帝給予獎勵的一種方式。

以上種種獎勵的方式，都是為了鼓勵宮廷畫家能夠更好提高技藝，勤勉作畫，為皇帝服務。但是在宮中僅有獎勵還是不夠的，與獎勵相對應，必須還要有嚴厲的懲罰措施來配合。一般來說，宮廷畫家作畫不認真，出現差錯，工作態度怠慢，都將會受到懲處。

雍正六年(公元一七二八年)十一月內務府檔案中有如下一條記載：“六品官阿蘭泰來說，為慈寧宮畫人散懶滑惰事啓怡親王。奉王諭：着沈嶽照唐英例每日稽查，伊等如有不來者，即行啓我知道。遵此。”怡親王允祥是雍正皇帝的弟弟，為總管內務府工作，負責宮廷畫家的管理，根據怡親王的指示，沈嶽在慈寧宮畫家中嚴加稽查，并於第二年的四月，將畫畫人王均革退，革退也即除名，

是清代宮廷中比較嚴厲的一種懲罰。

乾隆十一年(公元一七四六年)，宮廷畫家金昆奉命畫『大閱圖』，繪制過程中，由於疏忽，竟然將八旗的位置畫錯。事出之後，畫家金昆還企圖加以掩飾。乾隆皇帝得知此事，十分惱怒，責令怡親王允祥和內大臣海望將金昆治罪，停發其所食錢糧銀，并要革除其職務。同時對監督宮廷畫家作畫的催總花善，以督察不力也做出了停發俸祿的決定。金昆急忙將畫錯的地方改過，并經其他人說情，另外金昆畢竟是一在宮中時間較長的畫家，畫藝也比較出色，乾隆皇帝這才准許金昆繼續留在宮中作畫。但是當月只得到一半的俸祿，督察失職的催總花善也只得到一半的俸祿。

根據以上所引檔案資料，清代宮廷畫家受到的懲罰，僅革除職務和停發或減少俸銀這兩項，尙未見到因為畫錯畫而丟掉性命的例子，與前代有的宮廷畫家相比，處境還算是不壞的呢。比如像明朝有些宮廷畫家因作畫“不稱旨”，而被皇帝處死。明初宮廷畫家趙原“以應對不稱旨坐死”(朱謀翌『畫史會要』)；盛著以畫中“水母乘龍背，不稱旨，棄市”(徐沁『明畫錄』)。清朝若干皇帝曾經多次大興“文字獄”，株連甚衆，倒還沒有聽到清朝有過什麼“圖畫獄”。

以上三個方面的問題，都是根據清代內務府造辦處的檔案記錄歸納整理出來的，其他資料中並無明確的記載，這些均可以對畫史作一補充。